

2025년도 학생생활규정

1. 학생생활규정	p2
2. 용의 복장 및 기타 생활지도	p26
3. 학생자치회 회칙	p30
4.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 규정	p34
5. 학교생활규정 개정 규정	p48
6. 학교폭력 전담기구 규정	p49
7. 학업중단 예방 규정	p50



계원예술고등학교
KAYWON HIGH SCHOOL OF ARTS

1. 학생생활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도원칙)

- 1항 : 학생선도는 포상 및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2항 :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실시하며,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리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 3 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 (정의)

- 1항 :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항 :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항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항 :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1항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

- 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항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3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항 :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5항 :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6조 (구성)

- 1항 :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생활인권부장, 해당 예술부장, 학생생활 담당교사, 학생 안전생활인권부 교사로 구성한다.
- 2항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안전생활인권부장, 간사는 학생생활 담당교사로 한다.
- 3항 :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 7조 (기능)

- 1항 : 학생포상에 관한 심의
- 2항 : 학생선도에 관한 심의(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선도 대상일 경우)
- 3항 : 교사간 부정행위 발생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

제 8조 (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심의 결정한다.

제 9조 (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본인 및 해당 담임교사와 관계교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0조 (기록)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학생생활인권부의 학생생활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는다.

제 3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11 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항 :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항 :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항 :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항 :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4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12 조 (조언)

- 1항 :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3항 :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항 :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13 조 (상담)

- 1항 :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2항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3항 :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4항 :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항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항 :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7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8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9항 :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의)

- 1항 :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4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혼계를 할 수 있다.
- 5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훈육)

- 1항 :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3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4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5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6항 :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7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키높이 책상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뒤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0분 동안 분리 후 귀	복 시에 따라 수업 참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종료 시까지) 교무실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수업 시작 후 10분)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교무실 (6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8항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항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항 :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4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방과 후 : 즉시 되돌려줌 ※ 교직원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3항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항 :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6 조 (훈계)

1항 :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에 따른 조인, 제13조에 따른 상담, 제14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5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

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3항 :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4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7 조 (보상)

- 1항 :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8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1항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항 :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의제기)

- 1항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항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0 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5장 포 상

제 21조 (종류) 본교 학칙 제35조에 의거 학교장은 성적우수상, 교과우수상, 공로상, 봉사상, 3년 개근상, 학급상, 계원상 및 기타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2조 (절차)

- 1항 : 21조에 열거된 표창은 제23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해당(관련) 부서장은 본 위원회 (또는 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다.
- 2항 : 직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할 때는 학교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종전 관례에 준한다. (전 직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3조 (기준)

- 1항 : 성적우수상 (품행이 단정하고, 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외부상 시상 기준이 됨)
 1. 반별로 4명 이내에서 담임교사가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자 선정 성적 산출 : 1, 2학년과 3학년 1학기 총 5개 학기 평균 점수의 평균 - 3개년간의 무단결석일수 (단, 전·편입생의 경우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추천대상자에 해당함)
 3. 위의 성적우수상은 졸업식 때만 수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3학년 담임 회의에서 정한다.
 4. 성적우수상 중 수석학생에게는 이사장상을 수여하며, 수석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과 순으로 돌아가면서 시상한다.

2항 : 교과우수상

- 1. 과목우수상과 실기우수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 2. 과목우수상(일반과목) : 학기별 성적인 4%이내(1등급)인 자
- 3. 실기우수상(전공과목) : 학기별 성적이 10% 이내인 자
단, 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의 소수전공인 경우 그룹별 1등을 실기우수상으로 선정하며 시상대상 그룹은 과(科)협의회에서 결정되되 1명 이상을 추천할 수는 없음.

3항 : 3년 개근상(3개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한 번도 없는 자)

4항: 공로상(학교의 발전과 학생 자치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1. 학생회부문: 학생회자치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3개 학기 이상 학급자치회장)
- 2. 예능실기부문: 해당 실기 경연대회에서 입상하여 학교 명예를 빛낸 자
(각 과별 정원의 5% 이내)

5항 : 봉사상

- 1. 학생자치회 부문: 학교 및 학급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 실적이 현저한 자
(학생자치회 3학년 학생, 3개 학기 이상의 학급자치회장 및 부회장)
- 2. 예능실기부문: 예능 실기부문에서 봉사활동이 현저한 자
(각 과별 정원의 5% 이내, 무용과와 연극영화과는 3명까지 허용)

※ 4, 5항은 졸업식 때 수여하며, 재학 중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제외

6항 : 계원상

1. 명칭 : “계원상”
2. 목적 : 본교의 명예를 빛낸 사람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애교심을 고취하고 학교의 발전상을 홍보하고자 함.
3. 수상부문 : 가. 음악부문 나. 미술부문 다. 무용부문 라. 연극·영화부문 마. 기타
4. 대상자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서
 - 가. 동아음악 콩쿠르, 중앙음악 콩쿠르, 한국일보 음악 콩쿠르, 중앙일보 주최 미술경연대회, 한국일보 주최 미술경연대회, 동아공예전, 한국미술대전, 동아무용콩쿠르, 서울국제 무용 콩쿠르 및 코리아 국제 무용콩쿠르 3위 이내로 입상한 자
 - 나. 대한민국 음악제, 대한민국 무용제, 대한민국 연극제, 영화제 또는 기타 예술 및 사회활동에서 탁월한 역할을 하여 본교의 명예를 빛낸 사람
 - 다. 계원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람
5. 수상일시 : 매년 개교기념일
6. 기타 : 부문별 전공 부장은 매년 9월 2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한다.

7항 : 예술상

3개년 동안 예술실기 부문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위의 “계원상”의 시상기준에 버금가는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졸업식 때 시상함

8항 : 교내실기대회상 : 교내미술·음악·무용실기대회, 연극·영화제에서 입상한 자

9항 : 23조와 관련된 단서

1. 공로상, 봉사상, 예술상은 재학 중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경력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2. 3개년간 무단결석 5일(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0회)이상인 자는 공로상, 봉사상, 예술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공로상, 봉사상, 예술상은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특별히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를 시상할 수 있다.
4. 기타상 및 각종 외부에서 요청하는 상은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또는 직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추천한다.
5. 기타 전공별 시상 및 이달의 학생상, 다독상, 공모전 등은 교육계획서에 명시된 수상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6장 학생 선도 규정

제 24조 학생징계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다(제 3조 1항 참조)

제 25조 (종류) 선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항 : 학교내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
- 2항 :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
- 3항 : 특별교육이수(총 30시간 이내 범위)
- 4항 :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
- 5항 : 퇴학처분

제 26조 (방법) 선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항 : 학교내 봉사
학교내 봉사는 대상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을 봉사 일정에 따라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지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 기관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시킬 수도 있다.
- 2항 :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담당교사(또는 학부모)와 동행하여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 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3항 : 특별교육이수
특별교육이수는 선도대상 학생을 학부모와 협의하여 개별교육, 상담치료 교육, 위탁교육 등 별도 계획에 의거 특별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선도 대상 학생은 사안에 따라 아래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해야 한다.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교육이나 약물 / 마약 / 환각제 / 알콜중독치료학교 교육, 행동 / 심리장애 학생은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치료/교육,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의 단기간 교육, 상담 자원 봉사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하는 개별 교육 등

4항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석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항 :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선도 대상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 전학을 알선하거나,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 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한다. 학교장은 선도처분 전에 다른 학생의 면학분위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10일 이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27조 (‘단기 학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과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단기 학교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 1항 : 용모 문제로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 2항 : 수업태도 불량 및 면학 분위기 저해 자
- 3항 : 학생출입 금지 장소(술집, 나이트 클럽, 락 카페, 휴게텔, 비디오방 등)에 출입을 한 자
- 4항 :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 5항 :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6항 : 학교 단체 행사에 무단 불참한 자
- 7항 : 품위를 벗어난 욕설 및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
- 8항 : 고사 중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 9항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 10항 : 불건전 소프트웨어(성인용 영상매체 등)를 소지하거나, 불량서적(음란서적, 불량만화)을 탐독한 자
- 11항 :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자
- 12항 : 음주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자
- 13항 : 우발적으로 타인을 구타한 자
- 14항 : 도박을 한 자
- 15항 : 무단가출이나 미인정결석 월 3회 이상인 자
- 16항 : 학교에 허가 없이 불법 게시물을 부착한 자
- 17항 : 상습적으로 흡연한 자
- 18항 : 외설물을 교내에서 회람케 한 자
- 19항 :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0항 : 고사 중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압력을 가한 자 또는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해당 과목 0점 처리 단,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함)
- 21항 : 불법으로 후배를 집합시킨 자
- 22항 :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징수한 자 및 부정한 모금행위를 한 자
- 23항 :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
- 24항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 28조 (‘장기 학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과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 학교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1항 : 제 27조의 ‘단기 학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같은 처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2항 : 제 27조의 ‘단기 학교내 봉사’ 처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3항 : 무단가출이나 미인정결석 월 5회 이상인 자
- 4항 :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유한 자
- 5항 : 고의적으로 타인을 구타한 자
- 6항 : 환각제, 대마초, 본드 등 마약류 복용자
- 7항 : 음주 후 난동을 부려 학교명예를 훼손한 자

- 8항 :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자
- 9항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
- 10항 : 계획적, 조직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훔친 자
- 11항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 29조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과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 1항 : 제 28조의 ‘장기 학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같은 처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2항 : 제 28조의 ‘장기 학교내 봉사’ 처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3항 : 고의적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자
- 4항 : 무단가출이나 미인정결석 월 10회 이상인 자
- 5항 : 교내기물,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6항 : 교권을 모독한 자
- 7항 : 상습적인 마약류 복용자
- 8항 : 후배를 집합시켜 폭행을 일삼거나, 불순행위(음주, 본드흡입 등)를 강요한 자
- 9항 : 공공장소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행동을 한 자
- 10항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 30조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과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 1항 : 제 29조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같은 처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2항 : 제 29조의 ‘사회봉사 처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3항 : 제학 중 ‘사회봉사’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 4항 :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 탐지했거나 절취한 자
- 5항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6항 : 미인정결석 연속 10일 이상인 자
- 7항 : 불량한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자
- 8항 : 타인을 폭행할 때, 흉기를 사용하여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자
- 9항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 31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1항 : 제 30조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같은 처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2항 : 제 30조의 ‘특별교육이수’ 처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제 32조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과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1항 : 제 30조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같은 처분에 상응

하는 행위를 한 자

- 2항 : 제 30조의 ‘특별교육이수’ 처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3항 : 재학 중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 4항 : 미인정결석이 연속 15일 이상 시 1회 경고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5항 :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하여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자
- 6항 : 타인을 폭행할 때 흉기를 사용하여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자
- 7항 : 집단 폭력에 적극 가담하거나, 집단 폭력행위를 사주한 자
- 8항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9항 : 기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 33조 (선도 절차)

- 1항 :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교사 문답서 학생생활 담당교사의 경위조사를 토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2항 :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3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4항 :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이라도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시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사 기간은 선도(징계)기간에서 제외된다.
- 5항 : 단기 및 장기 학교 내 봉사 시 수업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학생안전생활인권부 주관 하에 방과 후 2시간씩 봉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제 34조 (선도결정)

- 1항 :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징계(선도)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선도) 내용이 확정되면 담임(학생생활 담당 교사)은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학생선도에 협조를 구한다.
- 3항 : 장, 단기 학교 내 봉사가 결정되면 해당 학생을 학생안전생활인권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 4항 :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위 ‘가’ 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5조 (기간조정) 학교장은 선도 기간 완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 혹은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36조 (징계 재심청구)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다음의 각 항과 같이한다.

- ① ‘퇴학처분’을 비롯한 선도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시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상위 결정기구인 ‘생활지도협의회’에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재심청구신청을 받은 경우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 ④ 재심의 결과가 퇴학 처분인 경우, 학생 및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 37조 (행정심판, 행정소송) 징계재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항과 같이 한다.

- 1항 : 행정심판
 -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2)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항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7장 또래조정

제 38조 (목적) 또래조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공동체회복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제 39조 (운영원칙) 또래조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1항 : 학교 구성원이 상호의존적 및 상호존중의 관계라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 2항 : 또래조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학교생활규정의 ‘특별생활지도’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실시된다.
- 3항 : 또래조정에 의뢰된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항 : 처벌 위주보다는 피해자와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방식을 지향한다.

제 40조 (의뢰 대상) 또래조정은 학교 구성원의 판단으로 학교라는 공동체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사항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자치 또래조정에 의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41조 (또래조정 구성원 조직 및 선발) 또래조정은 조정자(학생) 2명, 서기(학생) 1명, 가해 학생, 피해학생, 도움 교사 1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참여도 가능하다.

1항 : (조정자) 학교 교칙을 잘 준수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신청을 통해서 우선 선발하고, 법적 소양 능력 평가 및 담당 교사 추천, 면접의 심층 과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또래조정 교육을 전문상담사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2항 : (서기) 모범적인 학교생활, 법적 소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3항 : (도움 교사) 학생안전생활인권부 교사 중 1명을 선발하며 일정 기간을 두고 순번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제 42조 (또래조정 구성원 역할)

또래조정 구성원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들은 사전 예비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조정에 참여토록 한다.

1항 : (조정자) 갈등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타협점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역동적이고 유연한 협상 절차를 주도한다. ‘처벌’이 아닌 ‘행동의 원인’을 찾고 그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협동적인 관계 및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항 : (서기) 또래 조정 과정을 지켜보며 모든 대화 내용을 압축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최종적인 합의결과를 명시한다.

3항 : (도움 교사) 조정 전반을 지켜보며 조정자가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 한다. 단, 조정 과정에 깊숙이 간섭하고자 하는 행동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

제 43조 (또래조정 프로그램)

1항 : 또래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정 결과에 따라서 2개 이내의 다양한 조정 프로그램<표 -1>을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선택은 또래 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항 :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 또는 이를 거부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에 따라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항 : 또래조정 프로그램 이행 기간은 조정 확정 후 2주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 검토 후 조

정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 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복수로 선택하여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또래조정의 조정자는 원활한 조정과정을 위해 사전에 조정 대상자의 문제를 검토하여 2, 3가지 이행항목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1> 또래조정 프로그램

순	또래조정 프로그램
1	사제 동행 산책
2	사제 동행 산행
3	자기 성찰서 작성
4	친구에게 편지쓰기
5	직접 마음 전달하기
6	명상하기
7	선생님과 공부하기
8	책읽고 감상문 쓰기
9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기(3-10명)
10	친구와 농구하기
11	역할극 하기
12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
13	아침인사 캠페인 동참하기
14	단체운동하기

제 44조 (또래조정 운영 학생에 대한 보상) 또래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의해 다양한 보상할 수 있다.

1항 : 참여 구성원 역할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2항 :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을 기록한다.

3항 : 학교 모범상, 봉사상, 선행상 등 교내 및 교외 기관장 표창에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 제 1조 : 이 규정은 198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199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 4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 5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 6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7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8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9조 (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23년 3월 23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서식 1 >

성찰문

20 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p>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p> <p>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p> <p>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p> <p>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p>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번호 자	※말씀: 성명 : (사인)	담임 생활인성교육부장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보관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립 일시	반환 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가 있었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의견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이의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00-000-000)

20 년 월 일

계원예술고등학교장 (직인생략)

2. 용의 복장 및 기타 생활지도

-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 전 교사의 생활지도 참여
- 학생자치회 참여의 학생중심 생활지도
- 아침 맞이 운동 적극 실시

제 1장 교육활동 및 기본 생활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⑦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⑨ 학교는 제8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⑩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⑪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밀 보장 및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⑫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학교 및 교직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⑬ 학생 생활지도 시 학생 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생활지도는 반드시 교사가 진행해야 한다.
- ⑭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 ⑮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2장 복장

가. 하복, 춘추복, 동복

구분	하복		춘추복		동복	
	남	여	남	여	남	여
상의	셔츠류	하복상의 / 생활복 중 택1	와이셔츠 +넥타이	블라우스 +리본	춘추복 또는 무채색 폴라T 중 택1	
	니트류		조끼 / 자켓 중 택1	조끼 / 가디건 / 자켓 중 택1	조끼 / 가디건 중 택1	
	겉옷류				자켓 / 외투 중 택1	
하의	하복바지	하복바지 / 치마 중 택1	동복바지	동복바지 / 치마 중 택1	동복바지	동복바지 / 치마 중 택1

***교복 대신 학교 체육복+생활복 착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른 교복 규정은 없음.**

나. 주의사항

- 교복 디자인을 수선하여 변경하지 않는다.
- 교복과 체육복을 혼용하여 입지 않는다.
- 동복, 춘추복, 하복, 체육복 중 계절에 맞게 본인이 선택하여 입는다.
-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 선이다.
- 폴라T는 목 부분이 붙고 무채색(회색 또는 검정색 등)으로 입어야 한다.
- 두발: 파마, 염색은 하지 않는다.
- 장신구: 피어싱을 금지한다.
- 화장: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다.

제 3장 흡연지도

차별 횟수에 따라서 담임 및 학생부에서 차별 내용을 달리한다. 차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차별내용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자술서 작성	○	○	○	○	○	○	○
훈계 및 담임교사 통보	○	○	○	○	○	○	○
교내봉사		2일	3일	4일			
사회봉사					3일	5일	
출석정지							10일

제 4장 일과 중 무단 외출 방지 지도

담임 조 / 종례 시, 수시로 무단 외출 금지 강조(외출 시는 담임 발행의 외출증을 소지토록 지도)

제 5장 소지품 검사

- 가. 교육 목적상 학생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거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다만,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교육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나.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소지품검사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안전생활인권부 담당자와 의논한 후 시행하며,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 라.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흡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장 정보통신 규정

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4)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5)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6)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통신 기기 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등교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하교시에 찾아간다. (전공 과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4) 평가(지필, 수행)시 핸드폰을 비롯한 통신기기를 휴대한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 (5) 수업 중에는 어떤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단,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전자 기기(컴퓨터, MP3, PMP 등)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6) 학교 보관 중 전자기기 분실 시 교사는 학교장에게 알리고 1주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청구를 결정, 학교 안전공제중앙회에 보상 청구한다.

다.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학생자치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회는 자율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회는 계원예술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 3조 (회원) 이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동일 학년도에서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 4조 (권리, 의무) 이회의 회원은 이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5조 (참정권 보장)

- 1항 :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2항 :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3항 :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지도기구) 이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7조 (기능)

1항 : 이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각종 봉사 활동
- (4)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항 : 이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항 : 제 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이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항 :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4항 : 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 9조 (임원 선출 및 자격)

- 1항 : 임원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2) 통솔능력이 있는 자
- 2항 : 후보자 등록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 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0조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로 한다.(2년) (변경된 규정은 2024학년도 45기 신입생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로 한다.(1년) (변경된 규정은 2024학년도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후임자는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2020학년도 41기 신입생의 임기는 학사일정의 조정으로 인하여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1년 6개월)로 한다.

단, 2023학년도 44기 신입생의 임기는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1년 6개월)로 한다.

단, 2024학년도 1학기는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43기 회장 부회장과 44기 회장 부회장의 재임 기간이 중복된다.

제 11조 (효력 정지) 이 회칙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2장 대의원회

제 12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각 부서장, 서기 및 각 학급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3조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삭제 2013.06.03)
- 3.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안건의 처리

제 14조 (회의)

- 1항 :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항 : 정기회는 매 학기초 회장이 소집한다.
- 3항 :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장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제 15조 (임원 및 구성) 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각부의 부장
- 4. 각부의 부원

제 16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항 : 학생자치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항 :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3항 :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4항 :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5항 : 기타 학생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6항 : 기타 학생자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 7항 : 학생대표와 학교장은 1학기 1회 이상 면담을 시행한다.
- 8항 : 학생대표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조 (부서) 이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학예부: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2. 봉사부: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3. 생활부: 학내 질서 및 학내 교복 규정에 따른 용의 복장 준수에 관한 사항
- 4. 체육부: 교내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5. 홍보영상부 : 각종 행사를 위한 홍보전략 기획 및 홍보영상 제작 담당
- 6. 홍보아트부 : 각종 행사를 위한 홍보전략 기획 및 홍보인쇄물 제작 담당

제 18조 (회의)

- 1항 :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2항 : 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항 : 학급자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이상 학급회의 시간에 학급자치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급 인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학급자치회의 의결은 학급인원 4/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조 (임기)

1항 : 이 회 임원의 임기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로 한다.(2년) (변경된 규정은 2024학년도 45기 신입생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로 한다.(1년) (변경된 규정은 2024학년도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책에서 해임되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후임자는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2020학년도 41기 신입생의 임기는 학사일정의 조정으로 인하여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1년 6개월)로 한다.

단, 2023학년도 44기 신입생의 임기는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1년 6개월)로 한다.

단, 2024학년도 1학기는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43기 회장 부회장과 44기 회장 부회장의 재임 기간이 중복된다.

제 20조 (임원의 선출)

1항 : 각 부의 부장은 학생자치회 회장과 학생자치회 부회장이 지도위원회에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항 : 학생자치회의 각 부의 부장과 서기는 대의원회의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21 조 (학생지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는 교감, 각 예술부 부장, 학생안전생활인권부장, 학생안전생활인권부 소속 교사로 구성한다.

1항 : 기능

- (1) 학생자치회의 육성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치회 회칙의 개정안 최종 승인
- (3) 학생자치회 임원 임명
- (4)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 칙

- 이 규정은 2013년 6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9월 0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4월 6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자치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
2. 학생자치회 부회장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항 :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2항 :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한다)는 2학년 각 학급 회장단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로 등록할 경우 위원에서 자동 제외된다.

3항 : 학교선관위는 제2항의 위원명단을 선거일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4항 :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5항 :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투표자명부작성 및 투표에 관한 일은 학급 선관위가 담당한다.

- ① 투표자명부작성에 관한 일
- ② 입후보자등록에 관한 일
- ③ 선거 운동 관리에 관한 일
- ④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⑤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⑥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처분
- ⑦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6항 : 각급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7항 :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거담당교사를 포함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8항 : 위원회는 선거 종료 5일이 지나면 자동 해체된다.

제 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무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9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 6조 (입후보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재임 기간 동안 본교 2학년에 재학 예정인 자

제 7조 (투표자 명부의 작성) 학급선관위는 선거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 8조 (입후보 등록)

1항 : 학생자치회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 일부터 7일 이내에 타과(他科) 학생 중에서 학생자치회 부회장 입후보 자격에 결함이 없는 1명을 반드시 런닝메이트 (RUNNING MATE)로 지명해야 하며,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가 다 같이 후보자 등록신청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 학교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천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등록무효 및 사퇴)

1항 :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 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입후보자를 동시에 지칭함)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항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가 직접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3항 : 학교선관위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선거운동)

1항 :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하루 전일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항 :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학생 중에서 5명 이내에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연설원을 둘 수 있다.

3항 : 후보자는 제 2항을 택할 경우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선관위의 위원은 선거운동원 및 찬조연설원이 될 수 없다.

4항 :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학교선관위에서 배부하는 선거운동원명찰<제7호 서식>을 달고 하여야 한다.

5항 :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①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 ②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6항 :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 5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7항 : 학교선관위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1조 (벽 보)

1항 :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후보등록마감일 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 제 1항의 벽보 규격은 가로 38Cm, 세로 53Cm로 작성한다.

3항 : 학교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학교(학생부)의 승인을 득한 후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 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않는다.

제 12조 (소견발표회)

1항 :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항 :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3항 : 제 2항의 합동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시간은 각 10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발표순서로 한다.

4항 :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을 병자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3조 (투 표)

1항 :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2항 : 학교선관위에서는 선거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항 : 투표장소는 학교선관위가 투표시작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항 : 투표용지는 학교선관위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5항 : 투표 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6항 :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학급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항 : 학급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 이상의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8항 : 학급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 14조 (개 표)

1항 : 학교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항 :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3항 :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기표식인 경우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어느 란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③ 2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 표한 것
- ④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⑤ “○” 표 대신에 다른 기호 혹은 표시를 한 것

5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① 한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 표를 한 것
- ②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이나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항 :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학생자치 회의록으로 대신함)을 작성한다.

제 15조 (당선인 결정)

1항 :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런닝메이트 포함)를 학생자치회 회장 및 학생자치회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항 : 제 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앞 선 쪽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항 :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안전생활인권부장 및 교감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재선거)

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항 :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7조 (보궐선거) 학교장은 보궐선거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8조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1항 : 선거와 당선에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혹은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2일 이내에 교직원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 학교장은 제 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직원회의를 열어 심

의, 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당선무효)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0조 (보칙)

1항 : 학생안전생활인권부장 및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급선관위의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항 :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함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3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항 : 이 규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6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5월 10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제00기 학생자치회 회장·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의 선거 운동 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 도우미 명단]

번호	학년·반 명	성 명	선임·교체	비 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서명)

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0 학년도 제 ○○ 기 학생회 임원 공고

제 기 학생자치회 임원 추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6월 일

계원예술고등학교 학생선거관리위원회

[임 원 명 단]

부서	부장		부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예부				
봉사부				
생활부				
체육부				
홍보영상부				
홍보아트부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①</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②</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③</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④</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⑤</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⑥</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⑦</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p>기호 1번 선거운동원 ⑧</p>  <p>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p>

후보 사퇴서

본인은 20 년 월 일에 실시하는 20 년 학기 및 20 년 학기 임기의 학생자치회 회장·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퇴합니다.

	학생자치회 회장 입후보자	학생자치회 부회장 입후보자
인적 사항	1 학년 ()반	1 학년 ()반
	이름 :	이름 :
사유		
담임 교사 확인	(인)	(인)

20 년 월 일

학생자치회 회장 후보: _____ (인)

학생자치회 부회장 후보: _____ (인)

계원예술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5.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 1조 총 칙

1항(명칭) : 이 소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항(목적) :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항(기능) :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 및 협의하여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①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
- ③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제 2조 위원회의 조직

1항(구성) :

- ① 계원에슬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학생 대표 3명, 교원 대표 3명, 학부모 대표 2명, 전문가 1명, 전체 9명으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 ② 학생 대표 3명은 학생자치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교원 대표 3명은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교원 대표 1명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학부모 대표 2명은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 ⑤ 간사 역할은 생활지도 업무 담당자가 한다.
- ⑥ 전문가 1명은 변호사, 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등 위부위원으로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2항(활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④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 ⑤ 계원에슬고등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한다.

⑥ 각종 규정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한다.

3항(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조 위원회의 운영

1항(회의 개최) : 위원회는 학생 생활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항(의결) : 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항(운영 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의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4항(개정 절차 및 홍보) :

- 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 ② 심의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내용
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
민주적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입안 예고	-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20일 이상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개정된 규정 제출	- 초·중·고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로그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 필요 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6. 학교폭력 전담기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계원예술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및 운영) 계원예술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계원예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⑥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7. 학업중단 예방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사항[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 32883호, 2022.8.30., 일부개정]에 따라 계원예술고등학교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 3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원회 구성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등의 교원 5~10인으로 매 학년도 3월 3주 이내에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교내 다룬(유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학업중단 예방 계획 수립 및 협업 체계 구축, 학업중단 숙려제 기회 부여 및 학생 지원과 관리, Wee클래스(센터)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등을 담당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개정 완료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